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9.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6.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과 사업 변경·폐지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
 -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 신설(별표의 제47호)
 - 2)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사무 삭제(별표의 제16호)

○ 사업변경 및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1)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명 변경 및 근거법령 정비(별표의 제22호)
- 2)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 및 신청접수에 관한 사무 삭제(별표의 제2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사업 변경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제47호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8.18. 개정, 2021.6.1. 시행)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제공으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을 도모하고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안 별표 제16호 【의료보호증 재확인 사용 사무】는 「의료급여법」 제8조 전문 개정으로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업무가 폐지되었고,

제24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 및 신청접수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업 폐지에 따라 조례상 사무를 삭제하였음.

- 안 별표 제22호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 신청접수에 관한 사무】는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무명을 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동장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그 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43 호
----------	---------

제출연월일: 2021. 6.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과 사업 변경·폐지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

-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 신설(별표의 제47호)
- 2)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사무 삭제(별표의 제16호)

나. 사업폐지 및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1)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명 변경 및 근거법령 정비(별표의 제22호)
- 2)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 및 신청접수에 관한 사무 삭제(별표의 제2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04조
-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6호 및 제24호를 삭제하고 제22호의 사무명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근거법령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47.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동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6. 의료보호증 재확인 사용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동장	16. <삭 제>	<삭 제>	<삭 제>
22.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동장	22.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현행과 같음)
24. 아동인자능력 향상서비스 이용 및 신청접수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동장	24. <삭 제>	<삭 제>	<삭 제>
47. <신 설>	<신 설>	<신 설>	47.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각 호의 사무		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